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5. 22.(금)

#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현황 점검, 제2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제도 평가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전문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획전문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재정전문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제6기 평가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및 행정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다.

평가전문위는 지난 3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이하 ‘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2026년 제도 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약 두 달 뒤 열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 「제도 평가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으며, 위원 간 논

의가 이어졌다.

- \*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특히, 이번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성과 설명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도 참석하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6년 제2차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 2.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책임자	과 장 권오영 (044-202-3750)
		담당자(제도평가)	사무관 김여진 (044-202-3745)
		담당자(조건부협의완료)	사무관 정진문 (044-202-3754)



**□ 회의 개요**

- (일시) '26.5.22.(금), 14:00~15:25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에메랄드 홀(서울역 11번 출구)
- (참석)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및 평가전문위원 등 19명

**□ 상정 안건**

- (안건1)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  
\*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안건2)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보고  
\*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안건3) 조건부 협의완료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

**□ 회의 일정 (세부 시간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14:00~14:05	'5	개회 및 인사말
14:05~14:25	'20	(안건1)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
14:25~14:40	'15	(안건2)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보고
14:40~15:20	'40	(안건3) 조건부 협의완료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15:20~15:25	'5	마무리 말 및 폐회

□ **사회보장제도 평가 개요**

- **(목적)**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제도개선(안) 마련('16~)

※ 근거:「사회보장기본법」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사회보장제도 평가 지침」

- **(대상)** 장기간·대규모 예산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①]**

1. 연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절차)** ①평가 과제\*·연구수행기관 선정 → ②평가 사전기획\*\* → ③평가 실시 → ④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 절차에 따라 추진

\* 부내·외(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 후 선정

\*\* 평가 범위(지역·사업) 설정을 통한 평가 대상 명확화, 관계기관 협조 요청

\*\*\* 평가결과 위원회 보고 후 제도개선안 평가대상기관 통보,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 **(활용)**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개선 유도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개요**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평가 결과를 검증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대상)**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한 사업 중 '성과평가'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 **(절차)** ①평가조건부 협의완료 대상사업 통보(복지부) → ②성과평가 결과서 제출(지자체) → ③ 성과평가 결과서 검증 및 협의결과 지자체 통보(복지부)